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 달성 여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4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44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중증장애인생상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	2

I.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44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회용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20.

다. 회 부 일 : 2026. 4.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달성여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현 행	정회용의원안
○ 경영실적 평가기준 반영사항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 주요사업의 수익성 및 효율성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 <신 설> -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 된 사항	○ 경영실적 평가기준 반영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 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 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 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이행을 경영평가와 직접 연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¹⁾ 공공기관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 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시 해당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²⁾,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바, 총 1,024개 공공기관이 약 7,896억 원을 구매하여 평균비율 1.09%를 기록하여, 2024년 의무 비율(1.0%)은 충족했으나, 개별 기관별로는 약 42.4%(434개소)가 법정 비율인 1%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2025년에는 의무 비율이 1.1%로 상향됨에 따라 총 9,582억 원(1.35%) 규모의 구매 계획이 수립되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2024년 전체 87개 기관 중 77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공표’, 보건복지부. 2025.4.29.

우선구매목표를 달성하고, 평균 구매율은 약 1.60% 수준으로 나타남.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현황]

	기관수	달성	미달성
공기업	32개	25개 (78.1%)	7개 (21.9%)
준정부기관	55개	52개 (95.5%)	3개 (5.5%)
평균	87개	1.61% 달성	

자료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2025.4

그러나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³⁾ 현행 제도가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지표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일반 장애인생산품이 구분되지 않아 정책 유인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으

3) “상생 및 지역발전” 평가 항목(총 2점) 중 세부평가내용 :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실적

* 중소기업생산품(0.5), 기술개발생산품(0.2),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0.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 여성기업생산품(0.2), 장애인생산품(0.4),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0.2)

로, 경영평가 지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명시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간접적 규율수단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현행법은 체계상 법률에는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원칙 및 일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⁴⁾,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세부평가지표 등은 시행령⁵⁾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도 경영평가편람 등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6년도 평가편람은 세부평가내용에서 장애인생산품 배점(총 0.4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0.2점, 복지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0.1점, 고용부), 장애인기업 생산품(0.1점, 중기부)으로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있음.

4)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5)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외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⁶⁾,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⁷⁾, 등 다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만을 경영실적평가 고려사항으로 법률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는 유사 우선구매제도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현황]

법률	대상기업	구매목표제	주무장관의 권고·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시정요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기업	○	○ (권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중소기업	○	○ (필요조치요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여성기업	○	○ (권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창업기업	○	○ (권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현행법 체계상 경영평가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행법상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세부평가지표와 내용은 시행령과 평가편람에 위임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관련 사항은 편람 반영을 검토할 사항으로, 모든 평가지표를 법률에 규율 시 정책 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1

참고 1

공운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문

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동법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2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26년도 평가편람)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실적 * 중소기업제품(0.3), 창업기업제품(0.2), 기술개발제품(0.2),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0.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 여성기업제품(0.2), 장애인생산물(0.4)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춘생산물(0.2)

- **장애인생산물 0.4점**은 **중증장애인 생산물(0.2점, 복지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0.1점, 고용부), 장애인기업 생산물(0.1점, 중기부)으로 **세분화**